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-81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
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0일
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부수업무 신고 기관 : (주)헥토이노베이션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'24.3.15.

3. 부수업무의 내용

◦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, 홍보 및 컨설팅

\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6항4호, 동 시행령  
제11조의2제1항1호